

의안번호	제451호
의결연월일	. . . (제회)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24일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1
----------	-----

발의연월일 : 2023년 10월 24일

발의자 : 김국기, 박경숙, 김꽃임,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충청북도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지도·감독 등(안 제5조 ~ 안 제8조)
-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안 제11조)
- 분과위원회, 비밀의 누설금지 및 포상 등(안 제12조 ~ 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3. 10.
- 협의 :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과학관”이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4. “과학기술인 단체”란 도의 과학기술진흥 정책개발 및 신사업 발굴·육성·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강화, 산 · 학 · 연 · 관 협력 증진, 인력양성,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 기획연구 등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교육·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
3.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 연구 사업
4. 과학기술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과학기술문화 확산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관련 경진대회 및 과학축전 등의 개최
2.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사업
3. 과학관 등 과학기술문화 시설 확충 및 육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연구개발 인력양성
6. 그 밖에 도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과학기술진흥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충청북도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신사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인재국장

2. 바이오식품의약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3.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할 것
5.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6.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우리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 근거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3. 관련조문

-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안 제7조(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
- 안 제9조(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충북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원

나. 추계 결과 : 2024년부터 5년간 5,150,000천 원 정도 소요

-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100,000천 원
- 충북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 5,000,000천 원
-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원 : 50,000천 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보조금 및 도비(자체 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 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국비보조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 출		1,010,000	1,010,000	1,010,000	1,110,000	1,010,000	5,150,000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	-	-	100,000	-	100,000
충북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조달		1,010,000	1,010,000	1,010,000	1,110,000	1,010,000	5,150,000
의존재원	보조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자체수입	지방세	510,000	510,000	510,000	610,000	510,000	2,650,000